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76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 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2024.11.29.)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가능(안 제14조제8항)
 -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 -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모성 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정안전부예규) 2024. 11. 29. 일부개정을 통해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중 특별휴가에 관한 제7조의7은 제7항에서 모성보호시간을, 제8항에서 육아시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,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는 2024. 11. 29. 일부개정 전에 모성보호시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·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,
 -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제도를 유연화하고자 2024. 11. 29. 일부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근무가 가능해졌음.
-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 의 및 답 변 요 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8항 중 “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”를 “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u>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</u></p>	<p>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u>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</u></p>